

## 특허청,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대폭 강화

등록료 부족납부시 권리소멸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작업 착수

특허청은 권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등록료가 추납기간내 부족납부되었을 때에도 특허권 등이 소멸되지 않도록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관련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에서는 연차등록료 미납 등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권리소멸 방지를 위하여「권리소멸예고통지제도」를 2001년 1월부터 신규설정 등록, 상표갱신등록출원은 물론 모든 연차등록료까지 확대하여 우편 통지함으로써 권리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소멸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http://kipo.go.kr>)를 통하여 소멸예고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자신의 권리가 소멸 예고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2001년 6월부터는 특허청에 접수된 등록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등록업무처리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특허청에서는 특허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등록료가 추가납부기간내 부족 납부 되었을 때에도 소중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 포기되거나 소멸 되지 않도록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관련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참고>

특허(등록)료의 일부 부족납부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사례

#### (1) 관련대상 특허

- 특허 제00000호의 8년차 특허료의 법정기간내 일부 부족납부에 대한 특허청의 불수리처리
- 권리자 : 0000(국적 : 핀란드)
- 출원공고일 : 1991. 7. 8.
- 설정등록일 : 1991. 12. 30.
- 소멸일 : 1998. 7. 9.
- 소멸등록기재일 : 1999. 3. 4.

#### (2) 사건개요

권리자는 00000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1991. 12. 30. 등록 (특허번호 제 00000호)된 후 특허법 제79조에 따라 매년 소정의 연차특허료를 납부함. 그런데 권리자는 8년차 특허료 35만1,000원의 1차 납부마감일이 1998. 7. 8. 이었으나 납부하지 않고 추가납부기간 만료일인 1999. 1. 8. 연차특허료 납부서에 8연차특허료 35만1,000원, 가산특허료 35만1,000원, 합계 70만2,000원을 정확히 기재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납부시 대리인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수납 기관용 영수증에 가산료 35만1,000원을 제외한 연차특허료 35만1,000원만을 기재, 은행에 납부하였다가 위 착오를 발견하여 1999. 1. 10. 위 가산특허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특허청에서 연차특허료납부서를 불수리처리하는 통지를 하여 권리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

#### (3) 진행과정

- 1999. 6. 14. : 행정심판청구
- 1999. 9. 16.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재결(각하)

- 1999. 12. 18. : 행정소송 소장접수(담당 재판부 제2행정부)
- 2000. 4. 19. : 판결선고(각하)
- 상소여부 : 상소포기→1심 판결확정

## 특허대상 확대논의 본격화

- 특허대상,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 -

- ◆ 2001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에서 제6차 특허법상설위원회(SCP, Standing Committee on the Patent Law Treaty)가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73개 회원국, 5개 정부간기구 및 14개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특허실체사항의 통일화를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al Patent Law Treaty) 기초안이 논의되었다.
- ◆ 금번회의의 최대쟁점은 SPLT 기초안 제12조에 규정된 특허대상 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대표단은 특허대상을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대부분의 대표단은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외사를 밝혔다.
- ◆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93.12 Trips협정(제27조) 체결을 통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다.
- ◆ 따라서 특허대상 확대와 관련한 미국의 주장은 특허법 통일화의 근본 취지라 할 수 있는 “각국 특허법의 조화”의 범주를 벗어나, 지적재산권분야의 선점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특허법 개혁”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미국이 SPLT체결의 전제조건인 선발명주의 포기선언을 유보 하고 실현가능성이 작은 특허대상의 무제한적 확대를 주장한 것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특허대상을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상카드 확보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 ◆ 특허법 통일화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SPLT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은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 선발명주의 포기 선언을 매개로 특허대상 등 주요쟁점

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된다.

- ◆ 이러한 분석과 전망에 기초할 때, 이르면 차기 특허법상설위원회 (2002년 5월 개최예정)부터 미국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생명공학 (Biotechnology)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치료 방법(Therapeutic Methods), 심적처리과정 (Mental Steps), 계산방법, 데이터 구성을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 등에 관한 발명을 SPLT의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미국의 보다 구체적인 적극적인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설명자료 1>

- ◆ 지난 2000년 6월 체결된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SPLT는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요건, 즉 명세서 기재요건, 선행기술, 유예기간, 특허대상, 특허성 판단, 보정 및 정정, 거절이유, 무효 및 취소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 ◆ 특허청은 미래의 특허법을 결정짓게 될 SPLT에 대한 국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 지난 7월부터 산업계, 변리업계, 대학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실체법통일화 연구회를 결성하여 동 기초안에 대한 연구와 우리의 입장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왔으며,
  - 금번 SCP 참가국 중 유일하게 민간 전문가(특허실체법통일화 연구회 위원 2명)를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 파견 하였다.
- ◆ SPLT 기초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특허대상, 유예기간, 선행기술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발명자의 권익 보장을 강조한 미

국과 법적 안정성 유지 및 제3자의 권리보호를 강조한 다수국 사이에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전개되었다.

## <설명자료 2>

미국은 특허법에 별도로 불특허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논란이 많은 사항을 살펴보면,

### ◆ 생명공학(Biotechnology)

- 새롭게 발견된 미생물의 천연균주, 또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특허가 부여됨

- 생체생물(Living Organisms)

- Chakrabarty 판결이후, PTO 심판부는 유전자변형 식물과 다세포 동물에 대한 특허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 1987년에 PTO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외의 다세포동물을 특허부여의 대상으로 공시함

- ※ 1988년에 최초로 다세포동물(일명, 하버드 쥐)이 특허됨

- 재조합 DNA기술(Recombination DNA Technology)

- PTO는 분리된 인간 DNA 배열, 복제벡터, 변형세포, 정제 단백질, 또는 그와 관련된 공정 등을 포함하는 재조합 DNA 기술에 특허를 부여하고 있음

- 분자항체(Monoclonal Antibodies)

- PTO는 분자항체 기술 또는 면역학에 관련된 다수의 출원에 특허를 부여하고 있음

### ◆ 심적처리과정(Mental Steps), 계산방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 수학적 계산 또는 변형을 행하는 수학기공식

또는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는 특허될 수 없고, 아울러 인간의 사고 또는 계산인 심적처리 과정이 포함된 방법도 특허될 수 없음

- 그러나, 수학기공식 또는 심리시스템(mental system)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방법으로 특허가 가능함

- ※ 1981년 대법원은 Diamond v. Diehr사건에서 수학기공식을 포함하는 합성고무 경화 방법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함

### ◆ 비즈니스 방법(Business System)

- 최근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이 적절하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시스템의 형태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1998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State Street Bank 사건에서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종전의 예외를 폐지함

- ※ State Street Bank 사건은 투자(investment)하는 구성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임

### ◆ 원자 에너지 및 무기(Atomic Energy and Weapons)

- 특수한 핵물질 또는 원자력이 원자무기에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원자무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사용 가능하다면 원자에너지에 관련된 발명도 특허 가능함

### ◆ 치료방법(Therapeutic Methods)

- '96년에 의회는 의료관계자 및 관련의료기관의 신체에 대한 내과 또는 외과방법의 기술에 대하여는 침해를 이유로 구제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발효시켰음

- 즉, 내과 또는 외과방법을 청구하는 특허출원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 특허권자는 의료관계자/관련의료기관이 의의 자/기업체가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천연물(Products of Nature)
    - 천연물은 특허받을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됨
    - 그러나 천연물의 발견자가 변형 또는 순정(純正)된 형태의 천연물, 혹은 그 천연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청구하여 특허 받을 수 있음
  - 인쇄물(Printed Matter)
    - 인쇄물은 인간상호간에 통신을 위하여 종이 또는 다른 매체에 정보 또는 데이터의 배열이고, 그 자체로서는 특허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매체와 새로운 기능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인쇄물은 특허 가능한 대상임
- ※ 1994년 연방법원은 In re Lowry(32 F.3d 1579, 32 USPQ2d 1031) 사건에서 기억된 데이터의 추가, 삭제, 변경을 용이하게 하도록 정의된 데이터 구성을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에 대한 특허성을 판단하면서, PTO는 데이터 구성을 인쇄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함

## 대학의 창의력 활성화와 특허제도 개선방안 집중 논의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에서 특허청 과 과학재단 공동으로 「대학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에 관한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IT, BT, NT 등 지식산업의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우리나라 대학 연구성과의 특허관리 제도와 기술이전 조직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대학의 창의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과 미국, 일본의 성공사례들이 집중 검토되었다.

특히 대학교수들의 발명에 대한 특허 및 직무 발명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대학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산업화와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운영현황 분석과 바람직한 기능위상정립 등을 알아본다.

우리 나라의 대학은 국내 총 박사급 연구인력의 75%이상을 보유하고, 연구개발비의 10%이상을 소비하면서도 특허 등록률은 전체등록 건수의 0.51%에 불과하며, 특히 2000년 현재 46개 국립대학의 특허보유건수는 180건에 불과하여 한국과학기술원 843건의 1/5 정도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에 Bayh-Dole 법에 의하여 기존의 국가소유 원칙을 과감히 바꿔 발명을 가장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이나 중소기업에 소유권을 귀속시켜 줌으로써 특허권의 이전 및 실시를 통하여 창출된 부가 400억 달러에 이르고, 2200개의 회사가 탄생하고 고용도 28만명 이상 창출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대학의 창의력과 기술이전이 획기적으로 촉진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가장 성공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립대학의 특허제도개선을 위하여 첫째, 국유특허의 특허청에 의한 집중관리 체제에서 특허권을 대학이 소유토록 하는 분산관리 체제로 전환(특허법 제39조, 제40조 개정)하고, 둘째, 기존 국립대학에 설치된 기술이

전전담조직에 법인격 부여를 통해 특허권 소유·관리 주체로 활용(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개정) 하며, 셋째, 예산화계법을 개정하여 특허권의 활용 및 기술이전료를 대학이 연구, 발명자에 대한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이런 조치들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과학 기술 연구지원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와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어 산업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의장분류(일명 로카르노 분류)의 도입

- 특허청은 2002년 1월부터 분류심사에 착수하는 의장출원에 대하여 등록시 의장 국제분류인 일명 로카르노 분류를 한국분류와 함께 공보에 기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르면 2002년 하반기에 발행되는 공보에서는 두 종류의 의장 분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로카르노 분류는 의장분류체계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해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의장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2001년 현재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약 40여 개국이 이 협정에 가입한 상태이며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이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 이는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인 신헤이그 협정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헤이그 협정에 가입할 경우에는 로카르노 분류의 채택이 강제되므로 세계 각국이 협정에 가입하기에 앞서 의장 분류 체계의 통일화를 이루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신헤이그 협정의 가입에 대비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기존의 한

국분류 뿐 아니라 로카르노 분류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2001년 말까지 의장분류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에 있다.

-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한국 분류에 따른 심사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심사 이후 등록 시에 한국분류에 대응되는 로카르노 분류가 자동적으로 공보에 병기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로카르노 분류의 도입으로 인해 심사관은 외국의 등록의장을 한국분류로 전환할 필요 없이 로카르노 분류로써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외국에서의 의장등록을 희망하는 출원인 또한 통일화된 의장분류체계에 따라 외국 등록의장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에매한 특허분쟁 몸살

벤처 업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작권 및 특허 분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더욱이 권리의 대상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을 조짐이다. 권리를 가진 업체나 분쟁에 휘말린 업체 모두 수익모델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나 콘텐츠인 경우여서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분쟁이 늘어질 경우,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연관산업조차 위축돼, 가뜰이나 어려운 벤처 업계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싸움은 계속 되어야한다? 울 들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벤처끼리의 큰 싸움은 2월의 엔씨소프트-신일속씨의 저작권 분쟁, MP3재생장치를

들러싼 MP맨닷컴과 여타 MP3 플레이어 제작 업체들 간의 분쟁, 전자화폐업체인 씨앤씨와 케이비테크, 스마트로와 씨앤씨간의 2차례에 걸친 다툼 등 5건.

하반기에도 분쟁은 사그러들지 않고최근 인포허브가 받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영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두고 다날,모빌리언스 등 경쟁업체가 맞붙고 있다.

이 가운데 씨앤씨와 관련된 분쟁은 법원의 판단과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됐으나 나머지 4건은 쉽사리 해결 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리를 완전히 인정 받게 되는 업체는 치열한 경쟁에서우위를 확보할 뿐아니라 로열티 수입도 확보되기 때문이다. 반면 제소당한 업체들은 로열티를 물 경우 수익성이 없는데다 경쟁력도떨어져 사업을 접어야할 판이어서 물러설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해결이 늦어질 경우기술개발에 매진하거나 마케팅에몰몰해야 할 회사의 핵심 간부들이 싸움에만 매달리고 돈도 날려 성장의기력을 소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 모호한 개념에 특허를 부여한 것이 원인 창조물에 대한 재산권은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는 모든 벤처 업계가 동의한다.

하지만 주장하는 특허의 내용이 개념에만 국한되는 포괄적인 것이어서 해석에 따라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예컨데 인포허브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영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도 '결제 수단으로 휴대폰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개념도일 뿐 같은 개념 하에 다양한 유사기술이존재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특허청이 전자회로나 상품처럼 눈에 보이는 명확한 대상이 없는 개념에 특허를 부여한 것이 원인이다.

더욱이 외국의 경우 개념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가 없어 자칫 국내업체끼리 안방에서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K법무법인 임모(33)변리사는 "포괄적개념 특허에 대한 명확한심사 기준을 만들지 않을 경우, 기업의 대외 경쟁력마저 떨어뜨릴 소지가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일보

## “대학교재 불법복사 뿌리뽑아야”

대학교재용 학술도서를 전문으로 펴내는 법문사,박영사,다산출판사 등 5백여개 출판사와 저자, 관련단체들의 저술,출판 중단 선언이 우리 지식사회의 지적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불감증을 완치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지난 1999년에도 불법복사 근절을 주장하며 출판중단을 선언했지만 몇 개월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반짝효과를 보는 데 그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출판사들이 등록증을 반납하겠다고 나서고 저자들도 동참한다는 점에서 그 강도가 다르다.

◇ 출판중단선언 배경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사장 이기수,이하 복사권센터)등 출판관련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복사가 일상화돼 대학교재의 반품률이 80%가 넘는 풍토에서 학술도서를 더 이상 저술,출판할 수 없다”면서 “전국 대학가 복사점 1천여곳의 불법복사에 대한 실질적 단속이 취해지지 않으면 5백여 출판사의 등록증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의 초점은 채택된 저작물이 통째로 불법복사돼 정가의 반값 이하에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다는 데 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한 출판사 대표는 “대학교

재로 선정된 책을 과대표가 정가의 반값 이하에 단체로 돈을 건어 선불로 복사업체에 건내면 불법복제물이 강의실로 직접 배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판사 대표는 “올 가을학기 초 한 대학서점에 교재로 채택된 책을 1백20권 납품했으나 5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초판을 1천원 이하로 찍어내는 학술도서의 80% 이상이 출판사로 반품되는 실정이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학술출판사의 절반이상은 어차피 자연도태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이번에 출판중단을 선언하게 된 배경이다. 이들은 올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2백여 복사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국내도서 불법복사물 총 2천32종 4천5백16권을 확인, 수거해 기자회견장에 증거물로 제시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증거 확보 및 고소조치를 검토중이다.

◇ 해법은 없나=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법개정을 통해 출범한 단체가 복사권센터다.

복사권센터와 계약을 하면 책의 5% 범위내에서 A4용지 1장당 5원을 내고 한 사람에 한 부씩 합법적으로 낱장 복사를 할 수 있다. 복사권센터와 공식계약을 한 복사업체는 600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단속에 나서도 사법적 권한이 없

기때문에 복사업체의 완강한 저항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복사권센터측은 하소연한다.

따라서 불법복사 단속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올해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는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복사업소 주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범부조차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을 엄정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복사권센터는 지적한다. 지금까지 형사고소한 불법복사 업체에 적용된 벌금은 최고 5백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복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중찬) 소속 전국대학복사출력분과위원회 측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가능하면 복사권센터와의 계약을 준수하려 한다”면서 “책의 5% 이내인 복사범위와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복사문제에 크게 신경을 써오지 않았다는 한 출판계 인사는 “전권 복제를 아무 생각없이 맡기는 소비자의 무감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